

이민자 생활법률특강

한국의 상속제도

이민자 생활법률특강

한국의 상속제도



이민자 생활법률특강

한국의 상속제도

인쇄 2023년 5월 발행 2023년 5월
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<http://www.moj.go.kr> 02-2110-3314
집필진 김지연(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)
감수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디자인·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(주) 02-2285-5278

Contents

PART 1	누가 상속을 받나요?	02
	상속이란? 상속의 순서 더 알아보기 대습상속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	
PART 2	언제, 어떻게 상속을 받나요?	04
	상속재산이란? 더 알아보기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 상속되는 때 상속을 받는 방법 더 알아보기 특별한정승인	
PART 3	사이좋게 상속받고 싶어요	06
	상속재산분할협의	
PART 4	상속받기 싫어요	07
	상속포기 상속재산파산	
PART 5	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이 있어요	08
	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유언과 유류분 더 알아보기 법에서 정한 유류분	
PART 6	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	09

누가 상속을 받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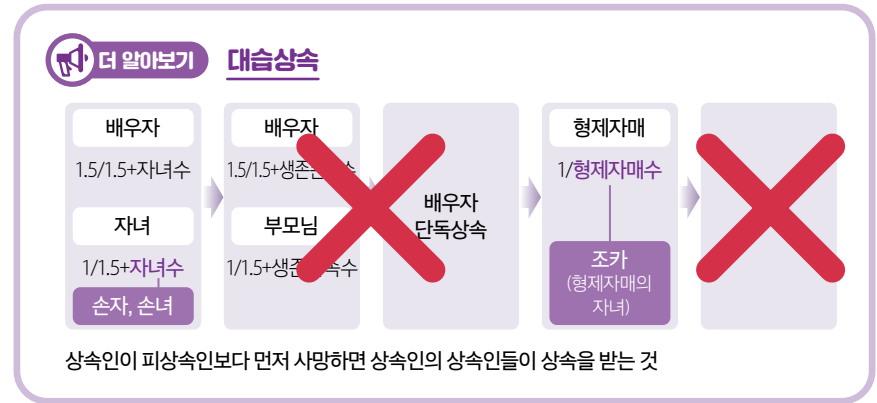
상속이란?

- 사망하는 사람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.
-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,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주로 배우자(남편, 아내), 직계존속(부모님), 직계비속(자녀)이 상속인이 됩니다.
 - 태아(출생 전 아기)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

상속의 순서

-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,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고, 직계존속도 없으면 혼자 상속을 받습니다.
 - 배우자는 직계존·비속보다 1/2만큼 더 받습니다.
- 직계비속 > 직계존속 > 형제자매 > 4촌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.
 -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
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

- 피상속인 등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사람
- 유언을 강제로 쓰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유언장을 망가뜨린 사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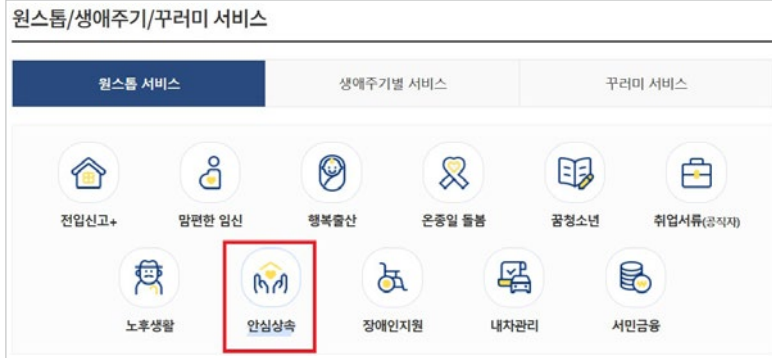
언제, 어떻게 상속을 받나요?

상속재산이란?

- 사망한 사람이 남긴 부동산, 현금, 주식 등 재산을 말합니다.
- 채무(빚)도 상속이 됩니다.

더 알아보기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

정부24(<https://www.gov.kr>) ▶ 서비스 ▶ 원스톱서비스 ▶ “안심상속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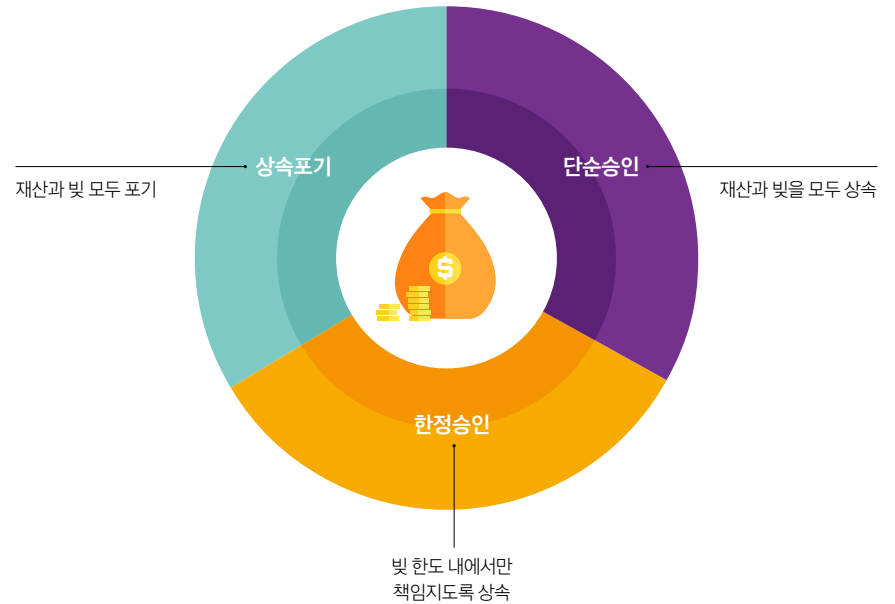
- 신청자격**
제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※ 단,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
- 신청기한**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
상속되는 때

-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상속이 일어납니다.

상속을 받는 방법

- 피상속인이 살았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에 3개월 내에 상속을 신청(청구) 합니다.
- 상속포기, 단순승인, 한정승인 중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는지 결정하여야 합니다.



더 알아보기 특별한정승인

-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부 상속(단순승인)받은 때에는,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(한정승인)고 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전부 상속(단순승인)을 받은 때에는, 성인이 되고 나서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(한정승인)고 할 수 있습니다.

03 PART 사이좋게 상속받고 싶어요

상속재산분할협의

- 상속인이 여러 명(공동상속인)이면, 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서로 의논하여 원하는 만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.
 -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(만19세미만)가 있으면 미성년자별로 “특별대리인”을 정해서 동의해야 합니다.
 - 공동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

상속재산분할협의서

20XX년 월 일 [사망한 사람 주소] 김뽕뽕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배우자, 자녀1, 자녀2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.

- 1. 상속재산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대 ㎡는 배우자 XX의 소유로 한다.
- 1. 상속재산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대 ㎡는 자녀 김○의 소유로 한다.
- 1. 상속재산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대 ㎡는 자녀 김V의 소유로 한다.

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각자 보유한다.

2000년 0월 0일

배우자	성명 (인)	주민등록번호	주소
자녀1	성명 (인)	주민등록번호	주소
위자녀1의특별대리인	성명 (인)	주민등록번호	주소

04 PART 상속받기 싫어요

상속포기

-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
-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
-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 받음

상속재산파산

- 3개월 이내 회생법원에 신청
-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이용
-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음



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이 있어요

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

- 법원에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- 피상속인을 특별히 모신 사람은 재산을 더 많이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



유언과 유류분

- 유언은 피상속인이 녹음, 손으로 작성한 문서 등으로 누구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.
- 유류분 청구는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언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상속재산을 어느정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비율(유류분)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

더 알아보기 법에서 정한 유류분

- 1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

배우자 $[1.5 \div (1.5 + \text{자녀수})] \times 1/2$

자녀 $[1 \div (1.5 + \text{자녀수})] \times 1/2$

- 2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

배우자 $[1.5 \div (1.5 + \text{생존존속수})] \times 1/2$

부모님 $[1 \div (1.5 + \text{생존존속수})] \times 1/3$

- 3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

형제/자매 $[1 \div (\text{형제자매수})] \times 1/3$

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

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, <http://www.klac.or.kr>)

- 법률 구조 안내, 법률서식 상담사례 확인, 사이버상담 신청, 방문상담 예약 등
- 이용 시간 : 평일 9:00-11:50, 13:00-17:50 전화상담

한국가정법률상담소 (☎1644-7077, <http://lawhome.or.kr>)

- 법률구조, 법률상담
- 이용 시간 : 평일 10:00-17:00, 전화, 화상, 방문상담 / 야간 상담 : 매주 월요일 18:00-21:00

뉴스타트 상담센터 (☎02-3016-4943, 4943)

-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(중합민원실 내)
- 이용 시간 : 평일 10:00-17:30, 전화 및 방문상담